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12
----------	-------

발의연월일 : 2025. 7. 29.

발 의 자 : 박상혁 · 정준호 · 서영석
조계원 · 김한규 · 백승아
양문석 · 조승래 · 박수현
임미애 · 이병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스포츠 경기 입장권등 예매는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예매 경쟁이 치열해져 일부 경기의 경우 선예매나 선선예매를 통해서만 입장권등을 구매할 수 있어 고령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부족함.

이에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매출규모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장애인등에 대한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 입장권 구매 방식 적용과 일정 비율의 입장권등 우선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24조 신설).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중 “장애인”을 “장애인등”으로, “특별지원”을 “특별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을 “장애인, 고령자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로, “장애인이 장애인”을 “장애인등이 장애인등”으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인등의 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할인권 또는 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 구매 접근성 증진을 위한 지원
 2. 장애인등의 관람 편의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전용관람석 등 제반 시설의 확충 및 설치 기준 마련
 3. 그 밖에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필요한 사업
- ② 매출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장애인등의 입장권등 구매 접근성 및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등에 대하여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의 방식으로 입장권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장의 규모, 좌석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입장권등을 장애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장애인등에 대하여 입장권등을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의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거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입장권등을 장애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2항에 따른 입장권등 구입 방식에 관한 조치 내용 및 우선 판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u>장애인의</u>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u>특별지원</u>)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u>장애인의</u> 스포츠관람권(<u>장애인이 장애인</u> 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u>사업</u> 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3(<u>장애인등의</u>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u>특별지원</u> 등) ① ----- ----- ----- <u>장애인, 고령자</u> 등(이하 “ <u>장애인등</u> ”이라 한다)- ----- <u>장애인등이 장애인등</u> ----- ----- <u>다음 각</u> 호의 <u>사업</u> ----- ----- -----.
<신설>	1. <u>장애인등의 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할인권 또는 교환권</u> 등(이하 “ <u>입장권등</u> ”이라 한다) 구매 접근성 증진을 위한 지원
<신설>	2. <u>장애인등의 관람 편의와 안전을</u> 보장하기 위한 <u>전용관람석 등 제반 시설의 확충 및 설치</u> 기준 마련
<신설>	3. 그 밖에 <u>장애인등의 스포츠</u>

<신 설>

<신 설>

관람권 보장에 필요한 사업

② 매출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경우 장애인등의 입장권등 구매 접근성 및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등에 대하여 현장 판매, 전화예매 등의 방식으로 입장권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장의 규모, 좌석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입장권등을 장애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장애인등에 대하여 입장권등을 현장판매, 전화예매 등의 방식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거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입장권등을 장애인등에게 우선적으로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신 설>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 현황 등에 대
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
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
업의 수행 및 지원, 제2항에
따른 입장권등 구입 방식에 관
한 조치 내용 및 우선 판매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4조(과태료) ① 제18조의3제3
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u>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u> <u>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u> <u>료를 부과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u> <u>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u> <u>징수한다.</u>
--	---